

의안 번호	2506	【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11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3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약사동 327-9번지 내 「약사다목적체육관」 운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
- 위 탁 기 간 : 2026년 상반기(위탁일로부터 2년)
-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연면적	운영시간	시설현황	위탁기간
약사 다목적 체육관	약사동 327-9	593㎡ (지상 2층)	평일08:00~22:00 (주말10:00~20:00) /월요일휴관	프로그램실, 사무실, 탈의실, 화장실 등	위탁일로부터 2년
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약사다목적체육관 시설 전반 관리
 -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(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)

- 소요예산 : 97,200천원(기간제인건비 68,400, 공공운영비 14,400, 지급수수료 등 11,400)

다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」 제15조의2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약사다목적체육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아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」 제15조의2,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체육분야의 전문지식과 체육지도자들의 다양한 현장지도 경험을 갖춘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
-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」

- 제15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중구청 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

- 제16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,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